

#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

빅데이터실 빅데이터전략부

제정 2016.09.12. 지침 제211호

개정 2024.03.28. 지침 제424호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「저작권법」 제24조의2,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」(문화체육관광부 고시)에 의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을 「저작권법」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"공공저작물"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심사평가원"이라 한다)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.
- "자유이용"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"공공누리"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(문화체육관광부 공고)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임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마크를 말한다.
- "2차적저작물"이란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.
- "저작재산권"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.

6. “저작인격권”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·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공공저작물을 생성, 취득, 관리,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내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.

**제4조(공공저작물 관리원칙)**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저작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## 제2장 공공저작권의 취득 및 관리

**제5조(저작권 관리)** 심사평가원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심사평가원에 귀속하여 관리한다.

**제6조(저작권 등 권리처리)** ① 원장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별지 제1호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28.>

③ 원장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담당자 지정)** ①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(이하 “관리책임관”이라 한다)과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저작물관리실무담당자(이하 “실무담당자”라 한다)를 임명하고,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홈페이지(이

하 “홈페이지”라 한다)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·제공·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
2.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심사평가원 내 업무 총괄 및 지원
3.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심사평가원 내 정책·계획 등과의 연계·조정
4. 공공저작물 관련 심사평가원 내 교육·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
5.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

③ 원장은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)** ① 관리책임관은 심사평가원의 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연간관리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심사평가원 내 공공저작물의 보유 및 개방 현황
2. 당해연도 신규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 계획
3.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관련 교육 계획
4. 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계획
5. 기타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계획

**제9조(공공저작물 관리교육)** ① 관리책임관은 전 직원의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·연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)** 원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저작권관리 목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·보존하여야 한다.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[전문개정 2024.3.28.]

### 제3장 공공저작물 제공

**제11조(공공저작물 개방)** ① 원장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제3자가 포함되어 작성한 공공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허락 동의를 있어야 개방이 가능하므로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원장은 공공저작물 생성시 초상권에 문제가 없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초상이용동의서를 활용하여 사진이나 영상 촬영시 본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원장은 홈페이지에 별표 1에 따른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⑤ 원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, 요약,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.

**제12조(공공누리의 적용)** ① 원장은 공표한 저작물이 자유이용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.

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공공저작물이 「저작권법」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.

③ 원장은 저작물 자유이용이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④ 원장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.

⑤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앞 표지 우측 상단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

디자인 요소 및 이용자 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착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3조(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)** 원장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. 다만, 자유이용 대상인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4조(비용의 부과)** ① 원장은 민간이용 촉진을 위하여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한다. 다만,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비용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의 「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
**제15조(제공 중단)**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
2.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
3.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4.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
5.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

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으로 통보한다.

## 제4장 공공저작물 이용

**제16조(공공누리 이용조건 준수)**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

는 자는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출처의 명시)**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「저작권법」 제37조 및 별표 2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)**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저작물의 변형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을 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9조(알선 또는 조정)**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및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.

## 제5장 보칙

**제20조(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)** 원장은 보유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, 손해배상청구,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.

**제21조(기타사항)**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<개정 2024.3.28.>

「저작권법」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“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”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
<공공누리 마크 이미지>

제1유형	제2유형	제3유형	제4유형	저작권 보호기간 만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처 표시</li> <li>- 변형 가능</li> <li>- 상업적 이용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처 표시</li> <li>- 변형 가능</li> <li>- 상업적 이용 불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처 표시</li> <li>- 변형 불가능</li> <li>- 상업적 이용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출처 표시</li> <li>- 변형 불가능</li> <li>- 상업적 이용 불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별도 이용조건 (출처포함) 없음</li> </ul>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「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」에 따라 “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”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,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,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,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,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을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- 1~4유형의 경우 출처(발행연도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과 홈페이지 URL,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)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)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.

<출처표시 안내>

[예시] 본 저작물은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에서 'OOOO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'저작물명(작성자:OOO)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'건강보험심사평가원, www.hira.or.kr'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: (성명) (연락처)  
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: (성명) (연락처)

[별표 2]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 <개정 2024.3.28.>

- 출처표시의무를 기본조건으로 하고, 상업적 이용금지, 변경금지 의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
- 단, 관리하는 저작물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 (출처표시 포함)이 없는 공공저작물은 별도 표시하여 안내함

공공누리 심벌마크	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
	<p>[제1유형] 출처 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처 표시</li> <li>■ 상업적 이용가능</li> <li>■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</li> </ul>
	<p>[제2유형] 출처 표시+상업적 이용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처 표시</li> <li>■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</li> </ul>
	<p>[제3유형] 출처 표시+변경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처 표시</li> <li>■ 상업적 이용가능</li> </ul>
	<p>[제4유형] 출처 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출처 표시</li> <li>■ 상업적 이용금지</li> <li>■ 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금지</li> </ul>
	<p>[저작권 보호기간 만료] 별도 이용조건 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별도 이용조건(출처표시 포함) 없음</li> </ul>

##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

저작권 양도인 \_\_\_\_\_(이하 "양도인"이라 함)과 저작권 양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양수인"이라 함)은 아래 저작물 " \_\_\_\_\_"에 관한 저작재산권(이하 "저작재산권"이라 함) 양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### 다 음

#### 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(계약의 대상)

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(이하 "대상저작물")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.

저작물명 :

저작자 :

권리 : [저작재산권 일부]

복제권,  공연권,  공중송신권( 방송권,  전송권,  디지털음성송신권),  전시권,  배포권,  대여권,  2차적저작물작성권

권리 : [저작재산권 전부]

저작재산권 전부 (복제권, 공연권, 공중송신권, 전시권, 배포권, 대여권, 2차적저작물작성권)

#### 제3조 (저작재산권 양도범위)

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.

#### 제4조 (양도인의 의무)

-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.
-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. 다만,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.
-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, 이용 허락된 권리,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,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

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양도인은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, 대상저작물의 제목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저작물일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양도비용)**

양도비용은 다음의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.

지급방식	□ 정액	□ 일시금	_____ 원
		□ 분할	- 1차 : _____ 원 - 2차 : _____ 원 - 3차 : _____ 원
	□ 기타		
지급시기	□ 정액	□ 일시금	____년 ____월 ____일
		□ 분할	- 1차 : ____년 ____월 ____일 - 2차 : ____년 ____월 ____일 - 3차 : ____년 ____월 ____일
	□ 기타		

**제6조 (확인 및 보증)**

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.

1. 양도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
2. 양도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, 초상권,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
3. 양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, 양도대상 저작물의 제목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,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

**제7조 (계약내용의 변경)**

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,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### **제8조 (계약의 해제)**

- ① 양도인 및 양수인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양도인 및 양수인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,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③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### **제9조 (손해배상)**

양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, 그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
### **제10조 (비용의 부담)**

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 발생시 양도인 및 양수인이 동등하게 부담한다.

### **제11조 (분쟁해결)**

-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다.

### **제12조 (비밀유지)**

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양수인에 관한 정보,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 저작물의 내용을,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**제13조 (기타부속합의)**

- ①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,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.

### **제14조 (계약의 해석 및 보완)**

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, 민법 등을 준용하여 해결한다.

### **제15조 (계약 효력 발생일)**

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
\_\_\_\_년 \_\_\_\_월 \_\_\_\_일

(양수인)

상 호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사업자등록번호 :

주 소 :

계약담당관 : (인)

(양도인)

상 호 :

사업자등록번호/생년월일 :

주 소 :

성 명 : (인)



[별지 제3호서식]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

##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

■ 저작자

- 소속 :
- 성명 :
- 연락처 :

■ 저작물

- 저작물명 :

■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

본 기관(개인)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저작재산권(□ 복제권, □ 공연권, □ 공중송신권, □ 전시권, □ 배포권, □ 대여권, □ 2차적저작물작성권) 이용허락에 동의한다.

■ 공공누리 적용 동의

본 기관(개인)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(□ 제1유형, □ 제2유형, □ 제3유형, □ 제4유형)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.

■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

본 기관(개인)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'변경가능' 조건에 따라,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.

※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,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

### [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]

1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소속, 성명, 연락처
2.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: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
3.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

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

저작자 : \_\_\_\_\_ (인)

활용기관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(인)

[별지 제4호서식] 초상이용 동의서

## 초 상 이 용 동 의 서

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, 사진,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, 배포, 공중송신,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_\_\_\_\_년 \_\_\_\_\_월 \_\_\_\_\_일

(소 속)

(성 명)

(인)

(연락처)

### [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]

1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소속, 성명, 연락처
2.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: 초상 공개·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
3. 개인정보의 보유, 이용기간 :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 
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중